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격무·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및 등급을 일부 조정하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국외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으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을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란”으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를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을 “소속 장관에게 제출”로, “소속 기관장에게”을 “소속 장관에게”로,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을 “소속 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를 “별표 제3호바목11)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별표 11 제3호라목의 2)”를 “별표 11 제3호라목4)”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를 “제15조”로,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를 “비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3조의2제3호중 ‘제11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장” 및 같은 항 후단 중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를 ‘제11조제3항 본문 중 “소속 장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은”을 “평가대상기

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병종란의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머.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

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별표 11의 제2호가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 (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 (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나) 지급방법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합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원	1)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월 20,000원
등 에	(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	
대 한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비고)

보전수 당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월 60,000원
	3)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별표 11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월 50,000원 (비고)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 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의 교육경력이 있고 55 세 이상인 교사 및 수 석교사	
--	--

별표 11 제3호나목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령 이 상 소방공무원: 월 50,000원 나)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월 40,000원 다) 8·9급 및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별표 11 제3호라목 1)부터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 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table><tr><th>계급·직무등급</th><th>월 지급액</th></tr><tr><td>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td><td>300,000원</td></tr><tr><td>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td><td>200,000원</td></tr><tr><td>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장</td><td>100,000원</td></tr><tr><td>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td><td>50,000원</td></tr></table>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장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장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 등(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 대학간,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 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	---

별표 11 제3호 바목 6)가) 중 “항공교통본부”를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바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 바목 11)가) 중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인명구조”로
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서”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근무자 중 인명
구조 및 화재진화 현장에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바목 20) 중 “각급
국립 초·중·특수학교”를 “국립학교”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바목2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 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 무원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 11 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중요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15퍼센트 이내)	가) 지급상한액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

나) 지급방법

(1)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현지화지급국 표 구분 중 “달러스”를 “달러스, 필라델피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학교	지급액
1. 유치원(제11조제1항가목 및 다목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재외근무지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2. 초등학교·중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3. 고등학교(제11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비고

- 위 표의 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나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한다.
- 재외공무원이 위 표가 적용되는 재외공관으로 전임(轉任)할 때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오던 자녀(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인 자녀로 한정한다)가 학업의 연속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그 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며, 해당 자녀가 그 학교에 취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거나 취학하게 되는 그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위 표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 학교”라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

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재외공무

원은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

생한 때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

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

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

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이 경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

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

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장관에

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는 평생교육시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

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

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

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

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

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

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

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

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

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

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속 장관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 · 휴학 · 복학 ·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② (생략)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8. (생략)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
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
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
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 12. (생략)

13. 별표 11 제3호라목의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
 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
 당)의 수당

14. ~ 17. (생략)

④ ~ ⑬ (생략)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
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
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
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
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

1. ~ 8. (현행과 같음)

9. -----

----- 별표 제3호바
목11)다)-----

10. ~ 12. (현행과 같음)

13. 별표 11 제3호라목4)-----

14. ~ 17. (현행과 같음)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제

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15조----- ----- ----- ----- ----- ----- 비례하여----- ----- -----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③ (생략)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1. ~ 2. (생략) 3. 제7조의2제5항 본문 중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제11조제3항 전단 중 “소속 기관장” 및 같은 항 후단 중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1. ~ 2. (현행과 같음) 3. -----, 제11조제3항 본문 중 “소속 장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401